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150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0.

발 의 자 : 최세진, 이종숙, 고찬양,
박주선, 최동철

1. 제안이유

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2023. 6. 13.에 개정됨.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강서구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 개정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, 안 제7조)

나.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의 노력을 반영하고,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8조)

다.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(안 제9조)

라. 기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 : 복지정책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0. ~ 2023. 11. 1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
외·단절된 1인”을 “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”으로, “정함을 목적으로”를 “정
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
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“사회적 고립”이란 가족·이웃·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
어가는 상태를 말한다.
2. “고독사”란 법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
3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
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둔 1인 가구(거소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)에
대하여”를 “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

의 부분) 중 “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”를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”으로, “적극적으로 수립”을 “수립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”을 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”를 “고립가구·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연구지원”을 “홍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”으로 한다.

3. 고독사 위험자·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

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7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중전의 제7조) 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긴급의료”를 “긴급의료 지원”으로 한다.

1.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
4.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

제7조(중전의 제8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조의 지원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을 지원 대상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인 가구 중 경제적”을 “경제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9조) 중 “예방사업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1인 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·이웃·친구 관계가 <u>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</u></p> <p>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<u>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4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·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-----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----.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“사회적 고립”이란 가족·이웃·친구 관계가 <u>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고독사”란 법 제2조에 따른 <u>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3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<u>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무연고사망자”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(거소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책무) ① ----- -----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</u> --- <u>수립</u>---.</p> <p>② <u>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<u>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</u> 2. <u>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</u> 4. <u>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<u>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(생략) 7. 그 밖에 <u>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>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) -----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</u>----- ----- 2. ----- <u>고립가구·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</u> ----- 3. <u>고독사 위험자·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<u>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</u> 5. ----- <u>홍보</u>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</u>----- -----
<p>제7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</u></p>	<p>제8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<u>긴급 의료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<u>개인별 맞춤형 서비스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8. <u>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8조(지원대상) 제7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로</u> 한다.</u></p> <p>1. <u>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</u>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</p>	<p><u>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</u></p> <p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3. ----- <u>긴급 의료 지원</u></p> <p>4. <u>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~ 8. (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u></p> <p><u>제7조(지원대상) 구청장-----</u> <u>----- 사람을</u> <u>지원 대상으로 -----</u> <u>---</u></p> <p>1. <u>경제적-----</u> <u>-----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</p> <p>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1인 가구</u>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<u>제9조</u>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고독사 <u>예방사업</u>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0조</u>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<u>가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</u>(협력체계 구축) -----</p> <p>----- <u>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</u></p> <p><u>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제11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

□ 「**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위험자”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